□ '21년 시행계획 변경사항
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계속지원 매학기평가 성적기준	○ 지원기준은 '21학년도 2학기부터 선발 연도와 무관하게 평가시기별로 강화된 성적 기준 일괄 적용	○ 지원기준은 '21학년도 2학기부터 선발 연도와 무관하게 평가시기별로 강화된 성적 기준 일괄 적용하되, **'20학년도 이전 신규선발자는 '21학년도 1학기 성적이 없거나 산출 불가능**한 경우 **강화 전 성적 기준** 적용
중간평가(2+2) 성적기준	○ '23년부터 직전 2개 학년 백분위점수 90점 이상 또는 평점 3.6이상/4.5만점(3.4이상/4.3만점)	○ '23년부터 직전 2개 학년 백분위점수 90점 이상 또는 평점 3.6이상/4.5만점(3.4이상/4.3만점)(단, **'21년 신규선발자부터 적용**)

□ 계속지원 성적기준 상향('21.2학기) 관련 세부지침

○ **매학기평가**
- (~'20년 신규선발자) **산출가능한 '21.1학기 성적이 있을 경우** 상향 **후**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적용하되, 산출가능한 **'21.1학기 성적이 없거나 산출불가한 경우** 상향 **전**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
- ('21년~ 신규선발자) 상향 **후** 성적기준 적용

○ **중간평가(2+2)**('23년부터 적용 예정)
- (~'20년 신규선발자) 직전 2개 학년 백분위점수 **87점 이상** 또는 평점 **3.5이상/4.5만점(3.3이상/4.3만점)**
- ('21년~ 신규선발자) 직전 2개 학년 백분위점수 **90점 이상** 또는 평점 **3.6이상/4.5만점(3.4이상/4.3만점)**

※ 위 사항은 중간평가(2+2) 충족을 위한 기준이며, 중간평가 학기에 장학금(등록금 및 생활비) 수혜를 위해서는 '매학기평가' 기준 충족 필요

□ (참고) 상향 전/후 계속지원(매학기평가) 성적기준

○ **상향 전 매학기평가 성적기준('21.1학기)**
- ~'11년 신규선발자: 백분위 85점 이상 또는 평점 3.5이상/4.5만점(3.3이상/4.3만점)
- '12~'19년 신규선발자: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.5이상/4.5만점(3.3이상/4.3만점)
- '20년~ 신규선발자
  · (등록금)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.5이상/4.5만점(3.3이상/4.3만점)
  · (생활비) 백분위 90점 이상

○ **상향 후 매학기평가 성적기준('21.2학기)**
- ~'19년 신규선발자: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.6이상/4.5만점(3.4이상/4.3만점)
- '20년~ 신규선발자
  · (등록금)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.6이상/4.5만점(3.4이상/4.3만점)
  · (생활비) 백분위 92점 이상